

ESG위원회 운영 규정

제정 2023.07.14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ESG(Environment, Social, Governance)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① 대학 ESG 정책 수립 및 실행 방안에 관한 사항
- ② 대학 ESG 정책 추진 관련 주요 계획에 관한 사항
- ③ 대학 ESG 활동에 대한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- ④ 기타 ESG에 관한 사항

제3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하며,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회는 기획처장, 교무처장, 총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
- ③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, 위원장은 총장이 겸임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.

제4조 (임기)

-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이 궐위 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5조 (위원장 등의 직무)

-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

제6조 (회의)

-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학 내 행정조직 및 그 밖의 기관의 책임자를 위원회에 배석 시킬 수 있다.

제7조 (간사)

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
제9조 (회의록의 작성)

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여야 한다.

제10조 (경비 등 지원)

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.

제11조 (운영세칙)
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23.07.1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3년 07월 14일부터 시행한다.